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69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전진숙・김 윤・박희승

박지원 • 박용갑 • 박해철

안호영 • 황정아 • 오세희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

설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에"를 "제10호 또는 제17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였을 때

제1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155조제10호에"를 "제155조제10호 또는 제17호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으로 징계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제155조(징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			
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u>제10호에</u> 해당하	제10호 또는 제17호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u>에</u>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		
	회의 표결에 불참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		
	조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으로		
	<u> 징계한다.</u>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	<u>4</u>		

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	별
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	하
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u>제155</u> .	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	회
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	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④·⑤</u> (생 략)	

	<u>제</u>	155	조제10
호 또는 제17	호에		
			·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밎	제5항
과 같음)			